

統一基金의 有用性分析

朴 進

통일기금의 목적은 현재의 소비를 줄이고, 총저축(정부저축+민간저축)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현재의 富를 統一이 되는 시점으로 移轉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과연 이 목적은 달성될 수 있는가?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國債을 발행하여 조세의 賦課時點을 달리하더라도 경제주체의 소비수준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對等定理, Ricardian Equivalence Theorem). 統一基金을 조성하는 것도 國債發行과 비교하여 富의 移轉方向이 다를 뿐 徵稅時點의 변화라는 점은 동일하다. 따라서 대등정리에 의하면 통일기금의 목적은 달성될 수 없다. 조성된 통일기금만큼 민간 저축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기금에는 國債와 구별되는 두가지 본질적인 특징이 있다. 통일시점과 통일 비용이 모두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이 두가지 불확실성은 미래의 가처분소득을 불확실하게 한다. 이와 같이 미래소득이 불확실할 때에는 대등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종래의 연구결과였다. 그러나 本稿는 2期 重疊世代模型(Overlapping Generations Model)을 이용하여 이 두가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對等定理가 성립함을 보이고 있다. 즉 통일기금은 민간저축을 감소시키므로 총저축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I. 序 論

統一後 獨逸聯邦政府는 동독지역에 대

筆者：本院 研究委員

* 草稿에 대해 귀중한 論評을 주신 本院의 文亨杓·高英先·曹東昊 박사님께 감사드린다. 이 분들의 검토의견은 本稿를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럼에도 오류가 남아 있다면 그 것은 전적으로 筆者의 책임이다.

1) 추정된 통일비용의 규모는 연구자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1990년 불변가격으로 작

하여 매년 연방예산의 약 25%, GNP의 약 5%에 달하는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남북한이 통일되었을 때 남한이 부담해야 할 통일비용¹⁾의 크기는 서독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클 것이다. 남북한은 東西獨에 비하여 경제력 격차가 크고 人口比가 작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높은 統一費用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하나의 答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統一基金이다. 통일기금을 조성하여 놓으면 통일후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논리이다. 그러나 統一基金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통일기금이 필요하다는 전제를 하고 있을 뿐 통일기금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²⁾ 本稿는 이러한 論議의 空白을 메우기 위해 작성되었다.

통일기금을 조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통일기금만큼 統一後의 稅負擔이³⁾ 경감되기 때문이다. 第Ⅲ章의 假定에서 다시 논의하겠으나 本稿에서는 이러한 통일비용의 일차적인 효과를 인정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기금의 효과를 相殺하는 다른 힘이 존재한다면 통일기금은 유용성이 없어진다. 統一基金이란 현재

계는 2,500억달러에서 크게는 1조 3,200억달러에까지 이르고 있다. 최소치라고 해도 원貨로 환산하면 200兆원으로서 1992년 남한의 GDP(1990년 불변가격)와 유사하다. 통일비용에 대한 추정결과가 연구자마다 크게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각 연구자마다 상정하고 있는 統一費用의 개념이 서로 큰 차 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통일비용을 정부부담액에 국한시킬 것인지 또는 민간부담액을 포함시킬 것인지가 한 예이다. 아울러 통일비용 산출과 관련한 기본가정이 다른 것도 한 요인이다. 예를 들어, 통일이 되었을 때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소득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지 등에 따라 상이한 추정결과가 도출되고 있는 것이다.

2) 다만 통일기금의 조성방법에 대한 논의는 具本湖(1992), 黃義珍(1993), 統一基金造成委員會(1992)에서 찾아볼 수 있다.

3) 국채발행, 외자도입 등도 가능한 재원조달방법이나 결국은 増稅에 의하여 상환되어야 한다.

의 富를 미래로 이전하고자 하는 정부의 強制的인 수단이다. 따라서 현재의 消費를 減少시키고 總貯蓄을 增加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저축이란 政府貯蓄과 民間貯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약 통일기금으로 인하여 정부저축이 증가하더라도 이것이 민간저축의 감소로 相殺된다면 統一基金의 의도는 무산되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기금이 有用性을 갖기 위해서는 민간저축의 감소가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정부저축의 증가가 민간저축의 감소로 상쇄될 수 있다는 論旨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찍이 「리카도」(D. Ricardo)의 對等定理(Ricardian Equivalence Theorem)에 의하여 밝혀져 있었다. 對等定理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國債은 결국 미래의 增稅를 통하여 償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增稅는 현재의 조세 감면액과 같은 現在價值를 가지게 될 것이다. 平生所得을 고려하여 소비를 결정하는 합리적인 納稅者라면 이와 같은 國債의 성격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세금을 올리는 대신 國債을 발행한다면 납세자들은 國債發行額(혹은 미래의 조세감면액)만큼 민간저축을 증가시킬 것이다. 미래의 稅負擔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결국 각 개인의 소비수준은 변함이 없으며 정부저축과 민간저축을 합한 總貯蓄 역시 不變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増稅와 國債發行은 하등의 차이가 없이 對等하다.

統一基金에도 이러한 「리카도」의 對等定理가 적용될 수 있다. 통일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增稅는 統一後의 稅負擔을 완화시킨다. 納稅者가 평생동안 납부해야 할 통일관련 租稅總額의 현재가치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통일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增稅는 그만큼 민간저축을 감소시킬 것이다. 이에 따라 각 개인의 소비수준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기금의 문제와 國債問題가 다른 점은 없는가? 물론 통일기금과 국채발행은 富移轉의 방향이 반대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國債의 발행이 미래의 富를 현재로 移轉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반면, 統一基金을 조성하는 것은 현재의 富를 미래로 이전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모형의 본질적인 차이로 볼 수 없다. 本稿는 통일기금과 국채발행의 본질적인 차이점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國債는 그 償還時點이 정해져 있어 增稅를 담당해야 할 세대가 알려져 있다. 그러나 통일은 그 시점을 알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통일기금은 통일이 일어나기 직전까지는 계속 蕊積되어 갈 것이며, 統一이 되어야만 비로소 그 혜택을 향유하는 世代가 밝혀진다. 통일이 되는 시점은 누구도 알 수 없으므로 統一基金은 納稅를 擔當하는 世代도, 受惠를 누리는

世代도 事前的으로 不確實하다. 더욱이 통일이 되는 시점의 세대는 統一費用을 담당해야 할 것이므로 可處分所得이 크게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미래세대의 소득이 모두 확실히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統一時點이 불확실하므로 미래세대의 可處分所得은 불확실하게 된다.

둘째, 통일기금이 국채와 다른 또 하나의 차이점은 總租稅負擔이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國債의 경우에는 상환액이 알려져 있는 반면 통일비용은 누구도 정확한 규모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통일의 시점이 정확히 알려져 있다 하더라도 통일후의 조세부담액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미래세대의 가처분소득은 계속 불확실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통일기금을 模型化할 때에는 統一時點(즉 增稅時點) 및 總租稅額의 불확실성을 도입하여야 한다.

미래소득이 불확실할 경우에도 對等定理가 성립하는지를 고찰한 연구로는 Barsky, Mankiw, and Zeldes(1986), Feldstein(1988), 그리고 Strawczynski(1994)가 있다. 위의 연구들은 미래소득의 불확실성을 도입할 경우 「리카도」의 대등정리가 성립하지 않음을 보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통일기금에도 위의 연구들과 같은 결론이 적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本稿의 모형이 도입하고 있는 可處分所得의 불확실성은 앞의 연구들에 나타난 소득의 불확실성과는 큰 차이가 있다. 本稿의 목적은 바로 그러한 사

실을 밝힘으로써 통일시점 및 통일비용의不確實性을 도입하더라도 대등정리가 성립함을 보이는 것이다.

本稿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第Ⅱ章에서는 「리카도」의 對等定理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살펴본다. 對等定理가 違背되는 경우들을 주로 다루되, 그 중에서도 특히 不確實性을 도입한 연구에 注目하고자 한다. 第Ⅲ章에서는 統一과 관련된 두가지 不確實性에도 불구하고 「리카도」의 對等定理는 성립함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간단한 2期 重疊世代模型(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O-G模型)을 도입하였다. 끝으로, 第Ⅳ章에서는 요약과 함께 결론을 내리기로 한다.

II. 既存研究의 紹介

「리카도」의 對等定理는 정부가 國債發行을 통해 팽창정책을 시도했을 때 총수요가 증가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개념이다. 이와 같이 國債의 효과는 거시경제정책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따라 지금 까지 상당한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그러나 統一基金을 직접 이론적으로 다룬 연구

결과는 全無하다. 그러나 앞서 밝힌 대로 統一基金의 문제는 富移轉의 흐름이 반대라는 점만을 빼면 國債를 발행하는 경우와 매우 類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國債의 효과를 논한 연구결과들은 거의 대부분 統一費用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原典의 國債發行의 효과를 統一基金의 효과로 解釋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리카도」의 對等定理를 통일기금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합리적인 납세자들은 이미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통일이 될 것이라는 예상하에 소비, 저축에 대한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이때 統一基金이 신설되었다고 하자. 납세자들은 조성된 統一基金만큼 통일이 되었을 때의 稅負擔이 경감될 것이라고 생각한다.⁴⁾ 이는 납세자의 미래의 富가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합리적인 납세자라면 統一基金稅만큼 민간저축을 감소시키고 원래의 소비계획을 유지시킬 것이다. 통일기금을 조성하더라도 정부저축(통일기금)과 민간저축을 합한 총저축은 基金造成前에 비하여 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統一基金은 有用性이 없다.

이에 대한 첫번째 반론은 納稅者의 生命이 有限하다는 것이다. 統一基金稅를 낸 납세자가 통일 이전에 사망할 경우, 그는 현재 統一基金稅를 내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生命이 有限한 納稅者는 統一基金稅가 부과될 경우 그의 平生所得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한다. 자연

4) 과연 納稅者가 미래의 稅負擔을 염두에 두고 현재의 소비를 결정하는가에 대한 實證分析으로는 Kochin(1972)을 참조.

히 소비도 줄어들 것이다.⁵⁾ 이런 경우 총 저축은 증가하므로 統一基金은 미래로 富를 이전하는 효과를 가진다.

이에 대한 再反論은 Barro(1974)에 의하여 제시되었다. 그는 납세자의 생명은 有限하지만 遺產을 남기려는 動機가 있으므로 對等定理는 계속 성립한다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子女의 效用수준을 重視하는 利他的(altruistic)인 납세자는 子女의 稅負擔을 고려하여 遺產의 크기를 결정한다. 父母는 統一基金稅가 부과될 경우 자녀의 稅負擔이 줄어든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납부한 統一基金稅만큼 遺產相續을 축소할 것이다. 遺產은 민간저축의 하나이므로 총 저축(통일기금+민간저축)은 불변이며 통일기금은 미래로 富를 이전하는 데에 실패할 것이다.

Barro(1974)의 논문은 많은 反響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Barro의 對等定理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들을 제시하였다. 부모가 遺產을 남겨 주지 못할 경우에는 對等定理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그중 하나이다. 부모가 통일기금세를 납부했다고 해서 자녀들로부터 그 납부액 만큼의 소득보조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

다. 이런 경우에는 통일기금세의 부담을 父母世代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므로 부모의 소비가 감소하고 통일기금도 효과를 가지게 된다. 이에 대하여 Barro(1989)는 유산이 零이 되는 모서리解(corner solution)에서도 대등정리는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그는 소비지출을 통해서도 자녀에 대한 所得移轉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遺產을 남겨 주지 않겠다고 생각하던 부모에게 統一基金稅가 부과되면 자녀에 대한 소비지출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자연히 부모의 소비수준은 유지되는 것이다. 그러나 筆者는 생각을 달리한다. 교육비 등 자녀를 위한 지출 역시 巨視經濟的으로는 소비지출의 하나임을 기억해야 한다. 父母가 자녀를 위한 지출을 감소시켰다면 總消費支出은 결국 감소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산상속이 零이 되는 경우에는 통일기금이 유용성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

Drazen(1978)은 子女에게 소득을 移轉하는 방법으로 遺產 외에 교육투자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일정 수준까지의 教育投資는 이자율보다 높은 收益率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 수준까지는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遺產을 남겨주는 것보다 낫다. 만약 어느 부모가 資產의 부족으로 인하여 자녀들에게 최적수준 이하의 교육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자.⁶⁾ 이때 統一基金稅가 부모세대에게 부과된다면 부모는 그만큼 유산을 감소시키려 할 것이다. 그러나 유산

5)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가 줄어드는 普通財를 가정한다.

6) 이 경우 유산은 물론 없을 것이다. 최적의 교육투자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유산보다는 교육투자가 우월하기 때문이다. 즉 Drazen(1978)의 결과는 모서리解로 인한 것이다. 이 점에서 Feldstein(1988)과 유사하다.

은 이미 없는 상황이었다. 만약 부모가 자신의 소비수준을 유지시키기 원한다면 통일기금세 부과액만큼 교육투자를 감소시켜야 한다. 그러나 자녀의 未來所得은 부모의 교육투자가 감소한 것보다 더욱 크게 감소한다. 교육투자의 수익률이 이자율보다 높기 때문이다. 만약 자녀의 미래소득을 일정하게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부과된 통일기금세보다 적은 폭으로 교육투자를 감소시켜야 한다.⁷⁾ 결국 교육투자를 고려한 모형에 統一基金稅를 도입하면 부모세대는 평생소득이 감소하고 소비는 줄게 된다. 통일기금은 유용성을 가지게 되나 경제주체의 효용수준은 감소하게 되는 점에 주목하기 바란다.

子女가 없는 父母는 유산을 남기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되었다(Buiter & Tobin, 1979). 그러나 Barro(1989)는 평균보다 많은 자녀를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는 統一基金稅 납부가 오히려 평생소득을 증가시킨다는 反論을 꺼냈다. 통일이 되었을 때, 家系의 稅負擔이 경감되는 규모는 자녀의 數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자녀가 없는 부모와 많은 부모간에 消費增減이 상쇄되어 對等定理는

7) 교육투자를 일정하게 유지한 후 미래세대에게서 統一基金稅만큼을 보상받는 것이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에게 모두 우월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자녀세대에게 그러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심정적인 呼訴 외에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8)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는 이론적 연구으로는 Victorio & Arnott(1993) 참조.

여전히 成立한다.

Barro(1974)는 납세자의 생명이 有限한 경우 對等定理가 성립하지 않음을 깨닫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利他的인 부모를 상정하였다. 그러나 유산상속의 動機가 과연 利他心 때문인지를 놓고 많은 논의가 있었다. Abel(1985)의 연구가 그중 하나이다. 그는 부모가 재산을 남기는 것은 그들이 利他的이어서가 아니라 예상했던 것보다 일찍 세상을 뜨게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결과 本意 아니게 남은 재산이 자녀에게 귀속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을 '뜻하지 않은 유산(accidental bequests)'이라고 불렀다. Bernheim, et al.(1985)은 유산이란 부모가 자녀들을 복종시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였다.⁸⁾ 위와 같은 경우에는 對等定理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유산상속의 動機에 대한 위의 지적들은 모두 一理가 있으나, 부모가 유산을 상속하는 데에는 분명 利他的인 動機가 있다. 따라서 Barro의 對等定理도 계속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Barro(1974)의 假定 중의 하나는 資本市場이 완전하여 政府나 個人에게 같은 수준의 利子率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 假定이 違背될 경우 對等定理가 성립하지 않음을 보인 연구도 있다. Leiderman & Blejer(1988)는 개인이 돈을 融資할 경우 정부에 비하여 破產의 위험이 높으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利子率을 적용받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경우 납세자는 현재의

세금을 미래의 세금에 비하여 높게 평가한다. 따라서 통일기금을 조성하면 납세자의 평생소득이 감소하고 현재소비가 줄게 된다. Hubbard & Judd(1986)는 유동성 제약(liquidity constraints)을 모형에 도입하였다. 통일기금세가 현재의 유동성을 감소시켜 소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논지이다. 위의 두 예와 같이 자본시장의 不完全性을 도입할 경우에는 통일기금이 유용성을 갖게 된다. 그러나 반면 경제주체의 효용수준은 감소하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Barro(1974)는 統一基金稅와 통일후의 비용조달을 위한 統一費用稅가 모두 定額

稅(lump-sum tax)⁹⁾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세란 대개 所得이나 消費 혹은 遺產의 일정 비율로 부과된다. Barsky, Mankiw, & Zeldes(1986)는 미래소득이 불확실하며 조세는 소득에 비례한다는 假定을 하고 있다. 소득에 비례하는 세금은 가처분소득의 변화폭을 축소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미래의 稅負擔을 경감시키게 되면 미래 가처분소득의 변화폭이 더 커지게 되는 결과가 된다. 이와 같은 미래의 위험증가는 예비적 저축¹⁰⁾(precautionary savings)을 증가¹¹⁾시킬 것이다. 미래의 稅負擔이 감소하므로 저축이 감소하기는 하나 그 중 예비적 저축은 증가한다. 따라서 총저축의 감소분은 통일기금세 부과액보다 작을 것이다. 결국 統一基金은 총저축(통일기금세 + 개인저축)을 늘려 富를 미래로 移轉하는데에 성공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미래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므로 경제주체의 효용감소가 불가피함을 유의해야 한다.

9) lump-sum tax의 국문번역으로는 中立稅가 보다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本稿의 모형은 노동공급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분명한 의미전달을 위해 定額稅로 번역하였다.

10) 예비적 저축이란 미래소득이 불확실할 때의 저축수준과 확률적 기대값으로 확실하게 알려진 경우의 저축수준간의 차이를 일컫는다. 미국의 家計貯蓄에서 예비적 저축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실증분석으로는 Skinner(1988), Guiso, Jappelli, & Terlizzese(1992)가 있다. 前者の 연구는 예비적 저축이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이며, 後자는 그에 반대하는 주장이다.

11) 이것이 성립하기 위한 효용함수 $U(\cdot)$ 의 특징은 일찍이 Leland(1968)에 의하여 제시된 바 있다: $U' > 0$, $U'' < 0$, $U''' > 0$.

12) Strawczynski(1993)는 Abel(1985)의 모형을 사용하여, 통일세를 신설하면 뜻하지 않은 유산(accidental bequests)이 증가함을 보였다. 그의 결과는 통일세를 신설하면 예비적 저축이 증가한다는 Barsky, Mankiw, & Zeldes(1986)의 副產物로 얻어진 것이다.

Strawczynski(1994)는 Barsky, Mankiw, and Zeldes(1986)의 결과를 多期(multi-period)模型으로 확장하고 豫備的 貯蓄 대신 豫備的 遺產(precautionary bequests)의 개념을 도입하였다.¹²⁾ 그는 부모세대의 소득수준이 개인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확실하게 알려져 있다고 前提한다. 반면 자녀세대의 소득은 평균과 분산이 알려지고 있을 뿐 불확실하다는 假定을 하고 있다. 자녀의 소득수준이 불확실한 경우에

는 부모세대에게는豫備的 遺產의 필요성이 발생한다. 정부가 統一基金稅를 부과하면 Barsky, Mankiw, & Zeldes(1986)의 결과에서 보았듯이 자녀소득의 불확실성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豫備的 遺產도 증가한다. 즉 통일기금은 유용성을 가진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미래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므로 납세자의 효용이 감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Feldstein(1988)은 Strawczynski(1994)나 Barsky, Mankiw, & Zeldes(1986)와는 달리定額稅(lump-sum tax) 가정이 유지되는 경우에도 대등정리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였다. 그의論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유산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父母의 2期所得이 밝혀지고 난 후이다. 그러나 1期에는 자신의 2期所得을 알 수가 없다. 2期所得이 밝혀진 후事後의으로 보면 1期의 저축액은過多하거나(2기소득이 높은 경우),過少한 것으로(2기소득이 낮은 경우) 판명될 것이다. 이때 2기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유산상속을 하지 않는 것이 최적의 선택이라고 가정하자. 이런 경우 통일기금 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부가 유산상속을 강제한 셈이 된다. 2기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유산을 남기지 않는 것이 최적의 선택임에도 불구하고統一基金稅로 인하여 강제적인 유산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 이때 통일기금은富를 현재세대에서 미래세대로 이전하는 역할을하게 된다. (부모가 통일세

를 납부한 것을 근거로 자녀에게所得移轉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점을 상기하자.) 따라서 통일기금세가 부과되었을 때, 납세자는 평생기대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생각하고 소비를 줄일 것이다. 즉 통일기금은富를 미래세대로 이전하는 효과가 있다. 이 경우에도 납세자의 효용은 감소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Feldstein은 이러한 결과를 두고, 통일후의 조세부담이定額稅(lump-sum tax)로 부과되는 경우에도 납세자의 미래소득이 불확실하다는 가정만으로 대등정리는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의 결과는不確實性에서 연유하였다기보다는 모서리解의 가능성, 즉遺產을 남길意思가 없을 가능성 때문에 얻어진 것이다. 第2期의 소득이 낮은 경우에도遺產相續을 하고자 하는 납세자에게는 소득이不確實하더라도對等定理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는 제Ⅲ장에서 상술된다.

통일비용세의 불확실성을 모형에 도입한 연구도 있었다. Feldstein(1976)은 납세자들이 통일비용세의 부담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현재의 조세부담을 보다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을 하였다. 만약 그 지적이 사실이라면 통일기금세를 부과하면 소비가 감소할 것이다. Chan(1983)은 통일비용이定額稅라는 가정하에, 세금을 부담할 계층이 불확실한 경우를 상정하였다. 통일기금이 조성되어 미래의租稅가 감소하면 가처분소득의 불

확실성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예비적 저축이 감소하여 오히려 총저축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Barsky, Mankiw, & Zeldes (1986)의 결과와는 반대임에 유의하기 바란다. 두 연구의 차이는 조세의 형태가 lump-sum인지(Chan[1983]), 소득세인지(Barsky et al.[1986])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III. 統一基金과 對等定理

1. 基本模型

먼저 이하의 논의에서 사용될 假定들을 소개하기로 한다.

〈假定 1〉 통일기금을 조성하면 그 조성액만큼 통일후의 조세부담이 경감된다. 이는 本稿에서 對等定理의 성립을 보이는데에 가장 핵심적인 假定이다. 통일기금의 목적은 현재의 富를 미래로 移轉시키는 데에 있다. 따라서 통일기금이 유용하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도 통일이 되었을 때 統一基金額만큼 재원조달의 부담이 輕減되어야 한다. 예컨대, 10조원의 통일을 조성해 놓으면 통일이 되었을 때, 그 10조원의 未來價值만큼은 統一費用稅 부담이 줄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없지는 않다. 曹東昊(1993)는 통일기금의 조성을 반대하면서 그 주요한 이유로 基金의回收가 불투명하며 現物化가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¹³⁾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통일기금을 조성하더라도 막상 統一이 되었을 때에는 租稅負擔을 완화하는 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假定 1〉이 성립한다고 본다.

먼저 基金의 회수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은 현실적으로 분명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통일기금을 南北協力基金에 포함시키고 經協事業에 적극 활용할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통일기금을 현재에 지출함으로써 미래의 통일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다면回收와 관련된 문제는 사라진다.¹⁴⁾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조성된 통일기금이 남북경협사업에 활용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한편 기금을 現物化하기 어렵다는 점은 統一基金의 문제라기보다는 統一費用을 국내에서 조달했을 때의 문제점이다. 단기간에 도입할 수 있는 외자규모는 통일비용에 크게 미달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비용의 상당부분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것은 불가

13) 그 밖에 정부부문이 민간부문에 비하여 비효율적이다, 재정의 부담능력이 낮다, 조세저항이 예상된다, 흡수통일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대북관계가 경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14) 그러나 南北經協事業이 北韓側의 拒否로 성사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本稿의 설명이 稀釋된다. 이 점을 지적해 주신 曹東昊 박사께 감사드린다.

피할 것이다. 이때 獨逸의例에서 보듯이 공장의 가동률이 급증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어 초과수요를 해소해 나가는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통일비용은 수년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이므로 국내조달에 대하여 지나치게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假定 2〉 遺產相續額은 陰數가 아니다. 만약 통일기금이 지나치게 조성되어 통일비용을 초과할 경우, 그 잉여 통일기금은 통일시점의 세대에게 되돌려질 것이다. 이와 같이 후손이 통일로 인하여 오히려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납세자가 알고 있다면 그는 遺產을 남기지 않으려 할 것이다. 따라서 〈假定 2〉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통일기금이 통일비용보다 작다는 假定도 필요하게 된다.

〈假定 3〉 납세자는 統一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있다. 전국의 成人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¹⁵⁾ 의하면 조사대상의 74.4%가 20년 이내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假定 역시 本稿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데에 매우 중요한 가정이다.

〈假定 4〉 統一基金稅와 統一費用稅는 모두 定額稅(lump-sum tax)이며 다른 조세는 없다.

15) 『中央日報』의 「國民意識調査」(1994년 9월 22 일자).

〈假定 5〉 소득수준은 알려져 있으나 통일이 되는 시점은 알려져 있지 않으며 소요될 통일비용도 알려져 있지 않다.

이상의 가정을 바탕으로 本稿의 모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두 期를 사는 납세자를 상정하자. 제1期에 그는 임금 Y_1 과 前代로부터의 遺產(B_1)을 총자산으로 1期의 통일기금세(T_1^L)를 납부하고 소비(C_1^y)와 저축액(A_1)을 결정한다. 2期에서 그는 은퇴를 하고 1期에서 넘어온 저축을 財源으로 일부는 2期의 소비(C_2^o)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녀에게 유산(B_2)으로 물려준다. 자녀세대는 2期에 임금(Y_2)과 유산(B_2)을 총자산으로 소비(C_2^y)에 지출한다. 2期 모형의 단순성을 살리기 위해 자녀세대는 2期末에 사망하며 후손을 두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자. 이 모형의 構造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O 는 old世代, Y 는 young世代를 의미한다).

1期	2期
Y	O
	Y

제2期에는 p 의 확률로 통일이 될 수도 있고, $1-p$ 의 확률로 통일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통일이 되면 자녀세대는 통일비용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그 稅額은 q 의 확률로 T_2^L , $1-q$ 의 확률로 T_2^S 이다. 제1세대는 제2기의 불확실성이 밝혀진 이후에 자신의 2기 소비와 유산을 결정한다. 만약

통일이 되면 자녀의 稅負擔이 크게 늘어날 것이므로 부모는 상대적으로 많은 유산을 남겨주려 할 것이다. 그러나 제1기의 소비와 저축을 정하는 시점에서는 다음 期의 통일여부 및 통일비용세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며 단지 그 확률만을 알고 있을 뿐이다. 이상의 상황설정은 납세자의 소득 불확실성 대신 자녀세대의 可處分所得의 불확실성이 도입되었을 뿐 Feldstein(1988)과 매우 유사하다. 이 모형은 2기의 최적 결정을 1기의 최적결정의 함수로 표현하는 방식(recursive method)에 의하여 풀어야 한다. 아래 모형에서 상첨자는 세대(young 혹은 old)를, 하첨자는 期數를 표시한다.

일반적으로 t 세대의 효용함수 V_t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V_t = U(C_t^y) + E[U(C_{t+1}^o) + \beta V_{t+1}]$$

(β 는 子女의 효용에 대한 父母의 加重值) \log 효용함수를 가정하고 2기 모형으로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V_1 = \log C_1^y + E[\log C_2^o + \beta \log C_2^y]$$

2. 統一基金과 對等定理

가. 2期의 最適化 問題

먼저 통일이 된 경우를 상정하자. 제2기의 모든 결정은 통일비용의 규모가 밝혀진 후에 일어나므로 2기에서는 불확실성이 없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begin{aligned} & \underset{C_2^o}{\text{Max}} \quad \log C_2^o + \beta \log C_2^y \\ & \end{aligned}$$

$$\text{s.t. } (C_2^y)^* = B_2 + Y_2 - T_2^r,$$

T_2^r 은 통일이 되었을 때의 統一費用稅.

$$B_2 = A_1 - C_2^o$$

$$= Y_1 - T_1 - C_1^y + B_1 - C_2^o \text{ 이므로}$$

$$\begin{aligned} (C_2^y)^* &= Y_1 - T_1 - C_1^y - C_2^o + Y_2 \\ &\quad - T_2^r + B_1 \end{aligned}$$

F.O.C.

$$\frac{1}{C_2^o} = \frac{\beta}{Y_1 - T_1 - C_1^y - C_2^o + Y_2 - T_2^r + B_1}$$

$$(C_2^o)^* = \frac{1}{1+\beta} (Y_1 + Y_2 + T_1 + T_2^r - C_1^y + B_1)$$

$$(C_2^y)^* = \frac{\beta}{1+\beta} (Y_1 + Y_2 + T_1 + T_2^r - C_1^y + B_1)$$

통일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위의 논의가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제2기의 稅額이 다를 뿐이다. 통일이 되지 않은 경우의 解는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C_2^o)^* &= \frac{1}{1+\beta} (Y_1 + Y_2 - T_1 + T_2^n - C_1^y + B_1), \quad T_2^n < T_2^r \end{aligned}$$

$$\begin{aligned} (C_2^y)^* &= \frac{\beta}{1+\beta} (Y_1 + Y_2 - T_1 + T_2^n - C_1^y + B_1) \end{aligned}$$

T_2^n 은 통일이 되지 않았을 때의 稅額

나. 1期의 最適化 問題

$$\begin{aligned} & \underset{C_1^y}{\text{Max}} \quad U(C_1^y) + E[U(C_2^0) + \beta U(C_2^y)] \\ & \end{aligned}$$

통일이 되었을 때 第2期의 조세액(T_2^r)

은 q 확률로 T_2^L 이며 $1-q$ 의 확률로 T_2^S 이므로, 최적화 式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이때, $Y_1+Y_2=Y$ 로 정의하자.

$$\begin{aligned} &= \log C_1 \\ &+ pq[\log \frac{1}{1+\beta} (Y - T_1 + T_2^L - C_1^y + B_1) \\ &+ \beta \log \frac{\beta}{1+\beta} (Y - T_1 + T_2^L - C_1^y + B_1)] \\ &+ p(1-q)[\log \frac{1}{1+\beta} (Y - T_1 + T_2^S - C_1^y + B_1) \\ &+ \beta \log \frac{\beta}{1+\beta} (Y - T_1 + T_2^S - C_1^y + B_1)] \\ &+ (1-p)[\log \frac{1}{1+\beta} (Y - T_1 + T_2^n - C_1^y + B_1) \\ &+ \beta \log \frac{\beta}{1+\beta} (Y - T_1 + T_2^n - C_1^y + B_1)] \end{aligned}$$

이때 제1계 조건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F(C_1^y) &= \frac{1}{C_1^y} \\ &- (1+\beta)[p(\frac{q}{Y - T_1 - T_2^L - C_1^y + B_1} \\ &+ \frac{1-q}{Y - T_1 - T_2^S - C_1^y + B_1}) \\ &+ (1-p)\frac{1}{Y - T_1 - T_2^n - C_1^y + B_1}] = 0 \end{aligned}$$

통일기금세(T_1)를 신설하여 통일기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액만큼 통일후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킨다고 하자. 이때, 제1기의 소비(C_1^y)는 어떻게 되겠는가? 다음 小定理는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小定理 1] 통일기금세가 부과되면 제1기의 소비(C_1^y)는 감소한다. 즉 대등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證明 : 포락선 정리에 의하면

$$\frac{dC_1^y}{dT_1} = -\frac{dF(C_1^y)}{dT_1} / \frac{dF(C_1^y)}{dC_1^y} \text{이다.}$$

이때, $-\frac{dF(C_1^y)}{dT_1}$ 는

$$(1+\beta) [\frac{1-p}{(Y - T_1 - T_2^n - C_1^y + B_1)^2}] \text{로 정리}$$

되므로 $p < 1$ 인 한 양수이다. (T_1 이 변화할 경우, T_2^L 과 T_2^S 는 T_1 의 변화를 그대로 상쇄시킨다는 점을 기억하자.)

또한 분모인 $dF(C_1^y)/dC_1^y$ 는 음수이다.

즉, 통일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한 $dC_1^y/dT_1 < 0$ 이 성립한다.

위의 결과를 보면 統一基金稅의 영향을 쉽게 알 수 있다. 통일기금세 T_1 을 부과하면 그를 부담하는 세대의 소비수준은 감소한다. 통일이 되었을 때의 稅負擔이 감소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소비수준은 감소하는 것이다.

本稿의 모형에서 대등정리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통일이 안될 경우에는 통일기금이 납세자에게 되돌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통일기금이 납세자에게 되돌려진다고 하자. 이때에는 통일의 확률(p)에 관계없이 대등정리가 반드시 성립한다. 위 小定理의 $dF(\quad)/dT_1$ 式에서 T_2^n 이 $-T_1$ 이 되기 때문이다.¹⁶⁾ 그러나 통일기금을 對北經協事業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일기금을 후대에 되돌려 줄 수가 없다. 이미 북한에 투자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납세자는 통일이 안될 경우 자신이 납부한 統一基金稅가 자녀들에게 혜

16) 이 점을 지적해 주신 文亨杓 박사께 감사드린다.

택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통일기금세가 부과되면 평생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소비를 줄이게 된다.

이상에서 우리는 통일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대등정리가 위배됨을 보았다. 그 이유는 조성된 통일기금이 대북 경협사업에 사용됨으로써 일종의 流出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流出은 통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수할 수가 없는 것이다. 반면 통일기금을 對北經協事業에 사용하지 않고 국내에서 운용하였다면 曹東昊(1993)에 의하여 지적된 기금회수의 문제가 발생한다. 기금회수가 불가능할 때에도 〈假定 1〉이 위배되어 대등정리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통일비용의 규모가 불확실하다는 사실은 대등정리의 違背와 관련이 없다. 즉 통일비용의 규모가 불확실하더라도 대등정리는 성립한다. 통일비용의 규모와 관계없이 現在課稅와 未來課稅 사이의 연계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Strawczynski(1994)나 Barsky, Mankiw, & Zeldes(1986)와는 다른 것임에 유의하자. 위의 두 연구에서는 통일기금세가 현재의 소비를 감소시키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통일기금을 조성하고 그 대신 미래의 조세를 감면하면 미래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증가는 조세의 형태가 소득에 비례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반면 本

稿는 定額稅(lump-sum tax)를 假定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의 조세가 감소하더라도 미래의 불확실성이 증가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 Chan(1983)은 모형에 定額稅를 도입하고, 통일기금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그의 결과는 세금을 부담할 계층이 불확실하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本稿에서는 이러한 가정을 채택하지 않았다. 통일이 되면 반드시 그 시점의 후손이 통일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암묵적인 가정이 되어 있는 것이다. 만약 Chan의 가정을 받아들이더라도 통일기금을 조성하면 불확실성이 감소하여 오히려 총저축이 감소한다. 통일기금이 총저축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본고의 결과는 계속 유효한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해 보자. 통일비용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대등정리는 유지된다. 그러나 통일여부의 불확실성을 도입하면 대등정리는 위배된다. 다음 期의 통일여부가 불확실한 것이 현실이라고 보면, 대등정리는 위배되는 것으로 속단하기 쉽다. 그러나 2期 모형은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자녀세대에 통일이 되지 않으면 통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假定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假定에서 밝혔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젠가는 통일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2期 모형을 多期模型으로 확장하면 결과는 달라진다.

[定理 1] 납세자가 언젠가는 통일이 된다고 믿으면(假定3) 對等定理는 성립한다.

證明 : 납세자의 제1기 최적화 문제는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Max}_{C_1^y} V_1 &= U(C_1^y) + E[U(C_2^o) + \beta V_2] \\ C_1^y \end{aligned}$$

$$\text{s.t. } B_1 + Y_1 - T_1 = C_1^y + C_2^o + B_2$$

마찬가지로, $B_2 + Y_2 - T_2 = C_2^y + C_3^o + B_3$
이므로 이를 B_2 에 대하여 정리한 후 위 制約式에 代入하면

$$\begin{aligned} B_1 + Y_1 + Y_2 - T_1 - T_2 \\ = C_1^y + C_2^o + C_2^y + C_3^o + B_3 \end{aligned}$$

통일이 t 期에서 된다고 가정하고 위와 같은 代入過程을 t 期까지 계속하면 아래와 같은 제약식을 얻을 수 있다.

$$B_1 + \sum_{k=1}^t Y_k - \sum_{k=1}^t T_k = \sum_{k=1}^t (C_k^y + C_{k+1}^o) + B_{t+1}$$

이는 통일이 되는 시점까지의 家系(dynasty)制約式이다. 그 의미는 1세대에서부터 통일이 되는 시점인 t 세대까지 가처분 소득의 총액(0世代로부터의 遺產 포함)과 소비지출의 총액($t+1$ 세대로의 유산 포함)은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제약식 하에서 統一基金稅가 부과된다고 하자. 多期重疊世代模型에서 납세자는 자기 家系의 전체적인 소비수준을 고려한다. 통일

17) 그러나 β 값은 통일기금을 조성하기 전의 최적 유산규모에는 영향을 준다.

기금세가 부과되었을 때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통일이 언제 발생하는지에 관심을 들 필요가 없다. 통일이 언젠가는 발생한다는 사실만이 중요한 것이다. 통일이 발생하기만 한다면 자신이 납부하는 統一基金稅가 통일시점의 後代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통일기금세가 부과되면 그만큼 遺產을 축소시키면 된다. 소비계획도 변화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론은 β 값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두기 바란다.¹⁷⁾

이러한 결과는 [小定理 1]에서도 도출될 수 있다. 제1세대는 자신의 자녀는 물론이고 모든 후손의 소득을 합한 家系(dynasty)의 소득을 극대화하려 한다. 제1세대는 자녀세대 이후의 모든 세대의 소득수준을 고려하므로 후손을 모두 제2세대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제1세대 이후의 모든 세대를 제2세대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언젠가는 통일이 된다’는 假定은 $p=1$ 이라는 假定과 같게 된다. 만약 後代의 언젠가에 통일이 된다면, 통일기금세의 부과는 통일후의 조세부담 감소로 상쇄되어 최적 C_1^y 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小定理 1]에서 $p=1$ 을 대입하면 이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각 세대의 행동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1세대는 통일기금세 만큼 유산(B_2)을 감소시킨다. 만약 제2기에 통일이 된다면 2세대의 조세부담이 統一基金만큼 감소한다. 이에 따라 2세대는

유산(B_2)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비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만약 통일이 되지 않는다면, 2세대는 줄어든 유산액과 자신들이 2期에 납부한 통일기금세를 합한 금액($T_1 + T_2^t$)만큼 다음 世代에게로의 유산(B_3)을 감소시킨다. 만약 第3期에 통일이 되면 3세대는 $T_1 + T_2^t$ 만큼 統一後의 稅負擔이 줄어들 것이므로 유산감소분을 그대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때의 유산감소분이란 통일기금을 조성하지 않을 때와 비교하여 감소한 부분을 말한다. 통일이 되지 않는다면, $T_1 + T_2^t + T_3^t$ 만큼 4世代에 대한 遺產을 감소시킴으로써 統一基金稅부과 이전의 소비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통일이 되는 시점인 t 期까지 계속된다. 統一基金稅를 부과하더라도 이전의 소비수준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며 총저축 수준도 변함이 없는 것이다.

IV. 結論

통일기금이 유용성을 가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統一基金은 統一後의 税負擔을 경감시켜야 한다. 本稿는 이 조건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통일기금을 南北經協事業에 사용하면 통일비용 자체가 절감되어 자연히 통일후의 税負擔도 경감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기금이 유용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조건

이 필요하다. 통일기금이 민간저축을 감소시켜서는 안된다는 조건이 바로 그것이다. 총저축은 정부저축과 민간저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부저축(통일기금)만큼 민간저축이 감소하게 되면 총저축은 不變이 된다. 총저축에 변화가 없다면 富를 미래로 이전한다는 통일기금의 목적은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다.

위의 논의는 「리카도」의 對等定理와 유사하다. 「리카도」의 대등정리는 원래 국채 발행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개념이었다. 국채는 미래의 증세를 통하여 상환되어야 하므로 未來의 富를 現在로 移轉하는 효과를 가진다. 반면 통일기금은 국채와는 반대로 현재의 富를 미래로 이전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통일기금에도 「리카도」의 대등정리를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된다. 즉 통일기금을 조성하여 정부저축을 증가시키더라도 민간저축이 감소하여 총저축은 변함이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기금은 국채와 비교하여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다. 本稿는 국채와 구별되는 통일기금의 특성으로 다음과 같은 두가지를 지적한다.

첫째, 국채상환은 시점이 알려져 있는 반면 통일시점은 불확실하다. 통일이 발생할 경우 통일비용의 조달을 위한 대규모의 增稅가 불가피할 것이므로, 통일시점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은 자녀세대의 가치분소득이 불확실함을 의미한다. 둘째, 통일비용의 규모 자체도 불확실하다. 따라서 반드

시 통일이 된다고 할지라도 통일후의 조세 부담액이 불확실하므로 미래세대의 소득은 불확실해진다. 그런데 미래세대의 가치분 소득이 불확실할 경우에는 대등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통일기금에는 對等定理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는가?

本稿의 결론은 統一時點 및 統一費用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대등정리는 성립한다는 것이다. 첫째, 통일시점이 불확실하더라도 대등정리는 성립한다. 다시 말해 새로이 통일기금세가 부과되면 그는 납부 세액만큼 遺產을 감소시킬 것이다. 이 납세자는 자신이 납부한 통일기금세가 미래의 어느 후손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통일기금이 일종의 유산과 같은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다. 물론 이에는 통일이 언젠가는 발생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둘째, 統一費用의 크기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대등정리는 성립한다. 통일기금세가 통일후의 세부담을 완화한다는 사실은 통일비용의 크기에 관계없이 때문이다. 물론 통일기금이 지나치게 조성되어 통일비용을 초과할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진다(假定 2 참조). 그러나 현재 거론되고 있는 통일비용의 규모를 고려할 때, 통일기금이 통일비용을 초과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本稿는 통일시점 및 통일비용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이 대등정리를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통일기금 無用論에 힘을 더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통일기금의 有用性을 論함에 있어서는 대등정리가 한국경제에서 성립할 것인지를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실증적인 문제로서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參 考 文 獻 ◇

- 具本湖, 「통일기금의 필요성 및 활용방안」,
〈통일기금조성에 관한 학술세미나〉, 통
일기금조성위원회, 1992. 10. 6.
李俊求, 『財政學』, 茶山出版社, 1994.
曹東昊, 『南北協力基金의 運用改善方案』,
政策報告書 93-05, 韓國開發研究院,

1993. 5.
統一基金造成委員會, 『통일기금의 조성방
안』, 1992. 10.
黃義玗, 「통일비용 추정과 통일기금 조성방
안」, 〈제2차 통일비용에 관한 정책세미
나〉, 통일기금조성위원회, 1993. 4. 15.

- Abel, Andrew B., "Precautionary Saving and Accidental Bequest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September 1985, pp. 777~791.
- Barro, R. J., "Are Government Bonds Net Weal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2, No. 6, 1974, pp. 1095~1117.
- _____, *Money, Expectations, and Business Cycles*, Academic Press, 1981.
- _____, "The Ricardian Approach to Budget Deficit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3, No.2, 1989, pp. 37~54.
- Barsky, R. B., N. G. Mankiw, and S. P. Zeldes, "Ricardian Consumers with Keynesian Propensitie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1986, pp. 676~691.
- Bernheim, B. D., A. Shleifer, and L. H. Summers, "The Strategic Bequest Motiv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985, pp. 1045~1076.
- Boadway, R. and D. Wildasin, "Taxation and Savings: A Survey," *Fiscal Studies*, 1994, pp. 19~63.
- Buiter, W. H. and J. Tobin, "Debt Neutrality: a Brief Review of Doctrine and Evidence," in G. M. von Furstenberg(ed.), *Social Security vs. Private Saving*, Ballinger, Cambridge, 1979, pp. 39~63.
- Chan, L., "Uncertainty and The Neutrality of Government Financing Policy,"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1983, pp. 351~372.
- Drazen, A., "Government Debt, Human Capital, and Bequests in a Life-Cycle Model,"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978, pp. 505~516.
- Feldstein, M., "The Effects of Fiscal Policies When Incomes Are Uncertain : A Contradiction to Ricardian Equivalenc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1988, pp. 14~23.
- _____, "Perceived Wealth in Bonds and Social Security: a Com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976, Vol. 84, pp. 331~336.
- Gordon, R. H. and H. R. Varian, "Intergenerational Risk Sharing,"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988, pp. 185~202.
- Guiso, L., T. Jappelli, and D. Tertlizze, "Earnings Uncertainty and Precautionary Saving,"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1992, pp. 307~337.
- Hubbard, R. G. and K. L. Judd, "Liquidity Constraints, Fiscal Policy, and Consumption,"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986,

- pp. 1~50.
- Kochin, L. A., "Comments and Replies: Are Future Taxes Anticipated by Consumers?"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1972, pp. 385~394.
- Leland, H. E., "Saving and Uncertainty: The Precautionary Demand for Saving,"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968, pp. 465~473.
- Leiderman, L. and M. I. Blejer, "Modeling and Testing Ricardian Equivalence," *IMF Staff Papers*, 35, 1988, pp. 1~35.
- Sandmo, A., "The Effect of Uncertainty on Saving Decisions," *Review of Economic Studies*, 1970, pp. 353~360.
- Sargent, T. J., *Dynamic Macroeconomic Theory*,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 Skinner, J., "Risk Income, Life Cycle Consumption, and Precautionary Savings,"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1988, pp. 237~255.
- Strawczynski, M., "Income Uncertainty, Bequests and Annuities," *Economic Letters*, 1993, pp. 155~158.
- _____, "Government Intervention as a Bequest Substitut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994, pp. 477~495.
- Verbon, H. and F. van Winden, *The Political Economy of Government Debt*, North-Holland, 1993.
- Victorio, A. G. and R. J. Arnott, "Wealth, Bequests and Attentions," *Economic Letters*, 1993, pp. 149~154.